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15.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9월 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9월 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9. 9)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과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업무관련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의 정수규정을 조정하고, 우리구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일부사업의 대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등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중 업무관련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를 2인 이내로 제한 (제9조제2항)

- 현 행 :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 개 정 :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등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제25조제2항 단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 오 윤)

○ 본 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비상임 이사 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새롭게 통보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던 것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 제25조제2항의 현행 단서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해서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제25조 제2항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단서 삭제를 “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제1호는「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번 호	233

제안년월일 : 2009. 9.
제 출 자 : 윤동규 위원

1. 수정이유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 제25조제2항의 현행 단서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해서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25조 제2항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단서 삭제를

“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제1호는「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 제2항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단서 삭제를 “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제1호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명〉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이사) ① (생 략)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 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 재정경제국장 ,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단 ,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1 ~ 2 (갱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서 삭제〉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제1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33호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업무관련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의 정수 규정을 조정하고, 우리구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일부사업의 대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등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중 업무관련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를 2인 이내로 제한 (제9조제2항)

- 현 행 :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 개 정 :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등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제25조제2항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대통령령 제20919호, '08.7.17)
-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행안부 회계공기업과-2715, '08.12.2)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주차문화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09.3.26~4.15, 7.23~8.12 각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9조(이사) ① (생 략)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 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